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1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령군수 (재무과장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# 『고령군 군세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1. 5. .  
제출자 : 고령군수

## 1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법」이 2020.12.29. 개정됨에 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

- 1) “균등분”을 “개인분”으로 개정(안 제6조)
  - 당초 균등분 세율 일부를 삭제
- 2)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개정(안 제7조)
  - 기존 표준세율을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변경

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과 같음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세법」

나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2021.3.19.~4.8. / 해당없음

다. 예산관련 : 해당없음

라. 성별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없음

##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의 제목 “균등분”을 “개인분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균등분”을 “개인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나목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장제2절의 제목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제1항의 표준세율”을 “제1항1호의 기본세율과 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1절 균등분</u></p> <p>제6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<u>균등분</u>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개인의 세율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</u> : <u>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 <p>2. 법인의 세율 : <u>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2절 재산분</u></p> <p>제7조(세율)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<u>재산분</u>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<u>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 <p>제8조(신고의무) <u>재산분</u>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, 지번, 용도, 층수, 건축물의 연면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령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1절 개인분</u></p> <p>제6조(세율) ----- <u>개인분</u> -----.</p> <p>1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2절 사업소분</u></p> <p>제7조(세율) -----<u>사업소분</u>----- <u>제1항1호의 기본세율과 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</u> -----.</p> <p>제8조(신고의무) <u>사업소분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## 관 련 법 령

### 「지방세법」 - 주민세

#### 제2절 개인분 <개정 2020. 12. 29.>

**제78조(세율)**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20. 12. 29.]

**제79조(징수방법 등)**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
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20. 12. 29.>

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
**제79조의2(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)**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9. 12. 31.]

#### 제3절 사업소분 <개정 2020. 12. 29.>

**제80조(과세표준)**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
**제81조(세율)**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20. 12. 29.>

1. 기본세율

가.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: 5만원

나.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

1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: 5만원

2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: 10만원

3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: 20만원

4) 그 밖의 법인: 5만원

2. 연면적에 대한 세율: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. 다만, 폐수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9.>

③ 삭제 <2020. 12. 29.>

**제82조(세액계산)**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20. 12. 29.]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재무과	
연 락 처	054-950-6121